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 기 관 의 장 |
| 람 |         |

## 제 1214 호 2020. 1. 16.(목)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1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2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3호[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4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5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63호[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64호[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은행 협력사업비 현황 공개]..... 16

|        |  |
|--------|--|
| 안<br>내 |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br>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br>☞ 북구 홈페이지( <a href="http://www.bukgu.ulsan.kr">www.bukgu.ulsan.kr</a> )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        |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 (☎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11호

#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하천의 명칭

신 명 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형\*

나.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1길 105

### 3. 점용 목적 및 개요

인공구조물 설치

###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산하동 933번지 일원

나. 면적 : 88㎡

###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일시 : 2020. 01. 10. ~ 2020. 02. 09.

영구 : 2020. 02. 10. ~ 2024.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12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무룡1로 116 외 2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
| (별지 참조)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 순번 | 종전주소        |                     | 도로명주소       |             | 도로명주소<br>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도로명<br>고시일 |
|----|-------------|---------------------|-------------|-------------|--------------|---------------------------------|------------|
|    | 읍·면·동·리·로·길 | 연암동<br>177-3        | 읍·면·동·리·로·길 | 무룡1로<br>116 |              |                                 |            |
| 1  | 울산광역시<br>북구 | 연암동<br>177-3        | 울산광역시<br>북구 | 무룡1로<br>116 | 2020-01-16   | 무룡로의연결도로로무룡로와연계성을반영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04-08-18 |
| 2  | 울산광역시<br>북구 | 신천동<br>546-2 외<br>1 | 울산광역시<br>북구 | 산업로<br>1464 | 2020-01-16   | 울산의산업을활성화시키자는취지로도로명을부여하였다.      | 2009-06-18 |
| 3  | 울산광역시<br>북구 | 송정동<br>1195-4       | 울산광역시<br>북구 | 송정22길 1     | 2020-01-16   | 옛 지명으로 현재도<br>사용                | 2018-05-10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13호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 도로명주소

| 종전주소         | 새로 부여된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변경사유  |
|--------------|--------------|--------------|-----------|
| 진장동 46B 4-1L | 진장9길 20-19   | 2020. 1. 16. | 신청에 의한 변경 |
| 진장동 46B 4L   | 진장9길 20-17   | 2020. 1. 16. | 신청에 의한 변경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1.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14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일    | 폐지 사유 |
|----------|-----------|--------------|-------|
| 무룡1로 116 | 연암동 177-3 | 2020. 1. 16. | 건축물멸실 |
| 산업로 1464 | 신천동 546-2 | 2020. 1. 16. | 건축물멸실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63호

## 울산광역시 복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주민의 건강증진향상을 위해 운영되어온 각각의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관리·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폐지조례 :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정비(안 제2조, 제3조)
  - 상위법 조항 추가 : 「지역보건법」 제6조
- 다.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조항 변경(안 제5조, 제6조)

### 3.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2항
- 지역보건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보건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연암동) 북구보건소

(전화 : 052-241-8161, 팩스 : 052-241-8109, E-mail : dool0624@korea.kr)

####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https://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울산광역시 복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2항, 「지역보건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생활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 관계 공무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회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회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회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회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협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2항, 「지역보건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p>제2조(기능) ①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건강증진 시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li> <li>2.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li> <li>3. 국민건강생활 실천 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의 법령 및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li> </ol> <p>② 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p> | <p>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li> <li>2. 국민건강생활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li> <li>4. 그 밖에 구청장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lt;삭 제&gt;</p> |
| <p>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p> <p>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p>  | <p>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

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의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보건소장이 된다.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임기) 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1. 지역주민 대표
- 2.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 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 4. 보건의료 관계 공무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삭 제>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와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규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신 설>

제8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 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 - 64호

##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은행 협력사업비 현황 공개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금고은행에서 출현할 협력사업비 총액 및 예산편성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 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

1. 금고 금융기관명 : NH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공고내용

가. 협력사업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별 | 협력사업비 | 비 고                   |
|-------|-------|-----------------------|
| 총 계   | 300   | ※ 매년 6월 30일까지<br>현금출연 |
| 2020년 | 100   |                       |
| 2021년 | 100   |                       |
| 2022년 | 100   |                       |

나. 2020년 예산편성내역 : 100백만원(당초예산편성)

4. 근 거

가. 「지방회계법」 제38조

나.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 문의 사항 : 울산광역시 복구 징수과 (☎052-241-7501)